

붙임 2.

주제 발표(토론) 결과 보고서

○ 토론개요

- 일 시 : 2018. 5. 24(목) 20:30 ~ 22:00
- 장 소 : 워크숍 숙소
- 토론주제 : 화재대응능력 평가방법 개선안
- 토론자 : 재난관리과장 등 11명

〈 화재진압대응능력 평가 방법 개선안 토의 〉

1. 現 화재대응능력평가 제도

가. 필기시험<2급>(금년은 2018.3.23. 소방학교에서 실시)

- 1) 자격 :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(신임자교육 수료자)
- 2) 문항 : 총 50문항 객관식 4지 선택형
- 3) 합격 : 70점 이상 득점자

나. 실기시험<2급>(금년은 2018.4.18.~4.25. 6일간, 소방학교에서 실시)

- 1) 자격 : 필기시험합격자
- 2) 항목 : 10개 항목(개인역량 9, 전술 1)
- 3) 합격 : 10개 항목 모두 60점 이상 득점자

2. 실시근거

가. 소방청 훈령 제2호 「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」

나. 서울시 소방학교 인재개발과-423(2018.2.12.)호 「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시험 운영 기본계획」

3. 발굴된 문제점

가. 전술능력평가(4인조법)을 받을 때 1인이라도 능력이 떨어질 경우 전원 탈락 할 수 있음

- 나. 제도적으로 자격취득을 독려하면서 공가, 초과근무를 적절히 인정하지 않음
- 다. 제도시행 이전 임용직원도 직위와 상관없이 자격취득을 요구받음
- 라. 제도시행 이전 임용직원도 소방사 기본교육에서 교육 받은 내용을 다시 재평가 받음
- 마. 10개 실기시험 항목 중 시험일 1개 항목이라도 점수가 모자르면 타항목 (합격된 항목, 향후 시험볼 항목)까지 모두 불합격 처리
- 바. 불합격 시킨 평가관에게 거칠게 항의 직원의 자세
- 사. 모든 소방활동에 대한 자격제도로 확산되고 있음을 경계할 필요
- 아. 자격취득 직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필요

4. 개선방안

- 가. 소방공무원의 화재대응능력자격을 시행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시행 이전 임용직원의 경우 평가에 대한 유연성 필요(직장훈련으로 보강)
- 나. 전술평가(4인조법)를 개인별로 평가하여 같은 조의 응시인원 때문에 평가에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보완
 - ① 4인 중 1명이 탈락하더라도 대체인력이 즉시 투입되어 지속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배려
 - ② 평가방법 중 시간한계를 두지 말고 시간은 적정시간의 기준을 두어 전체점수에서 가감하여 점수화
- 다. 제도적으로 독려하는 만큼 공가, 초과근무를 인정하고 개인적인 관련 자격증과 차별화 지침 마련(인명구조사, 소방차운용사 등 공동처리)
- 라. 10개 항목 중 1개라도 통과한 항목을 차후 시험에서 면제
- 마. 항목별 시험 중간에 시간을 알 수 있는 대형시계, 구령 등 마련
- 바. 소방에서 요구하는 자체 자격을 최소화(소방차운용사를 화재대응능력 평가에 포함하여 실시 등)
- 사. 자격취득직원은 근무평가 상향 조정, 성과상여금 최하등급 면제 등 반영

보고자 소방경 정숙경(서명) 2157

소방위 남재명(서명) 2157